

『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의 객관적 선정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제한을 5년으로 규정하여 중복지원 감증을 강화(안 제24조제3항제1호)
-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정량적·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(안 제25조제2항, 안 별표 1)
- 지원 단지의 선정·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규정(안 제25조제4항, 제5항)
-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연임제한 규정을 반영하여 보조금 심의기능 강화(안 제27조제3항, 제4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10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의 객관적 선정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 -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주택단지 선정과 동일 단지 중복 지원, 형식적 사업관리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고, 보조사업자의 계약규정 및 감독공무원의 준공확인 등을 명시하여 사업관리의 부실 우려를 해소하고, 사업의 심의·선정 및 사업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